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9. 4. 12.

제출자 : 평창군수

의안 번호	64
----------	----

1. 제안이유

관내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97도비보조사업으로 건립한 장애인재활센터를 활용하여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며 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에 대하여 정함(안제4조)
- 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그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를 우선으로 함(안제5조)
- 다. 작업장의 이용료는 무료로 하며,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이용료를 징수함(안제6조)
- 라.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 비영 리법인에게 작업장을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함 (안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 첨
- 나. 기타 : 영월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 및운영조례-사본

평창군조례제 호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부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작업장은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2390-10번지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2.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3. 재활, 자립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사업과의 연계추진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작업장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그 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6조(이용료) 작업장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위탁관리) ①군수는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평창군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작업장을 위탁관리(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 이하 같다)하게 할 수 있다.

②작업장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③작업장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기계, 기구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시에는 군수가 부담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작업장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시설사용에 필요한 제세공과금(전기, 수도, 전화료등)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작업장이 정상 운영될 때까지 군에서 군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⑥수탁자는 동 지번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평창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⑦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감독) ①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장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4.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사용된 부대시설 및 장비 외 비품집기 등은 모두 평창군에 귀속된다.

제11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령 발췌 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등 정신적 결함(이하 "장애"라 한다)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8조(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기준과 설치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영월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1995. 5. 31. 조례 제1524호]

개정 1995. 8. 8. 조례 제1527호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부여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월군 장애인 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위치) 작업장은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629번지에 둔다.

제 3 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 4 조(업무 및 기능) 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3. 재활, 자립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사업과의 연계추진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5 조(이용대상) 작업장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그중 생활보호법상의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 6 조(사용료) 작업장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영월군수가 따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1995. 8. 8>

제 7 조(위탁관리) ①군수는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영월군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작업장을 위탁 관리(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 이하 같다)하게 할 수 있다.

②작업장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수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③작업장 운영비는 수탁자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 할 수 있다.

④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기계, 기구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시 군수가 부담할 수 있다.

제 8 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작업장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시설사용에 필요한 제세공과금(전기, 수도, 전화료등)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작업장이 정상운영 될 때까지 군에서 군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⑥수탁자는 동 지번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영월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제 9 조(관리감독) ①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장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0 조(위탁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4.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사용된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 등은 모두 영월군에 귀속된다.

제 11 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2 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8.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